#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9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박상웅・박준태・최형두

박덕흠 • 신성범 • 이만희

윤재옥 • 신동욱 • 김 건

김종양 • 이상휘 • 유영하

이인선 • 한기호 • 최은석

이종욱 · 김태호 · 성일종

서천호 · 김민전 · 권성동

정연욱 • 이달희 • 유용원

김원이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 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혁신도시"를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을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시책"을 "제1항에 따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도시시책"을 "제1항에 따른 시책"으로, "혁신도시"를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u>인구감소지역 · 혁신도시</u> 활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	화)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			
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u>혁신도시 활성화</u>			
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u>활성</u>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화를 위한 시책을		
한다.			
② 정부는 <u>혁신도시시책</u> 을 추	②제1항에 따른 시책-		
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③		
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u>혁신도시시책</u>	<u>제1항에 따른</u>		
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	시책		
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			
전에 필요한 조치 및 <u>혁신도시</u>	<u>인구감소</u>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u>지역 • 혁신도시</u>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